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70
----------	------

2025년 9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3. 상정일자 :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9월 8일 상정·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마채숙)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 서울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 복지증진 및 아동의 권리 보장, 가족 다양성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여성가족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받고

자 함.

2. 주요내용

1)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소재지 :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대방동) 등

- 운영시설 : 서울여성플라자 및 서울가족플라자

▶ 서울여성플라자 : 지상 5층, 지하 3층(연면적 22,520㎡). 2002.6. 완공

▶ 서울가족플라자 : 지상 2층, 지하 2층(연면적 14,710㎡). 2020.10. 완공



서울여성플라자



서울가족플라자

○ 근거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기금 및 출연금 등)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주요사업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교육 및 자문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당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 권리 보장에 필요한 지원
- 국내외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 기관과의 연계·교류 및 민간 협력
- 서울여성플라자 및 서울가족플라자의 운영·관리 등

3) ' 26년 소요예산(안) : 19,754,834천원

4) ' 26년 예산 산출근거(안)

- 사업비 : 7,493,306천원
- 일반관리비(인건비, 운영비 등) : 12,261,528천원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5)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 및 시민체감형 양성평등 정책실행을 위해 설립된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을 통해,
-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 서울여성의 경력 활성화, 아동의 권리 보장, 그리고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세출예산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¹⁾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²⁾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4³⁾에 따라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할 기관 개요와 이사회 회의록, 결산보고서 등이 모두 제출되었음.

2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

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개요 및 현황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⁴⁾ 및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 서울시 여성 가족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 참여 및 복지증진, 아동의 권리 보장, 가족 다양성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2025년 8월 현재 여성가족재단의 운영 미션과 비전, 조직 및 인력, 예산 현황,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은 다음과 같음.

〈운영시설 개요〉

구분	서울여성플라자		서울가족플라자
위치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대방동)		동작구 노량진로 10(대방동)
규모	지상 5층, 지하 3층(연면적 22,520㎡)		지상 2층, 지하 2층(연면적 14,710㎡) ※경제정책실 분임관리공간(3,247㎡) 제외
건립기간	1999.11. ~ 2002.6.		2017.12. ~ 2020.10.
주요 시설	대관 공간	국제회의장, 아트홀, 시청각실, 아트컬리지	다목적홀, 교육장, 세미나실
	사무 공간	여성가족재단 및 입주기관 단체 사무실(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디지털성범죄안전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 등)	여성가족재단 및 입주기관 사무실 (거점2호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서울시가족센터 등)
	편의 시설	다목적라운지, 스포츠센터, 아기쉼터, 주차장 등	엄마아빠VIP존(3호·4호),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장난감도서관, 식당, 커피전문점 등
공유재산 운영방식 (기간)	관리위탁 (2021.1.1. ~ 2025.12.31.)		관리위탁 (2020.6.1. ~ 2025.5.31.)

〈여성가족재단의 미션과 비전〉

미션	양성평등 행복도시 서울 실현
-----------	------------------------

비전	여성·가족을 위한 일·돌봄·안전 지원 플랫폼
-----------	---------------------------------

전략 방향	① 저출생 대응 환경 조성 지원	② 서울아이 돌봄인프라 확대 및 운영 활성화	③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및 폭력 대응체계 운영 활성화	④ 시민생활 맞춤형 양성평등 정책개발 및 확산	⑤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 및 운영
--------------	-------------------	--------------------------	---------------------------------	---------------------------	---------------------

전략 과제	일·생활 균형 활성화	아동생활권 중심 돌봄지원 체계 강화	서울형 성주류화 제도 통합 운영 및 인프라 지원	양성평등 의제 발굴 및 현장 맞춤형 정책 지원	ESG 경영 내재화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활성화	경영시스템 선진화
	시민 출산·양육지원 강화	서울시 아이돌봄 기관 운영 활성화	피해시민 관점 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	양성평등 소통공간 활성화	미래지향적 조직문화 정착 및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

〈인력 및 조직 현황〉

(단위 : 명, 2025.5.기준)

구분	계	대표이사	일반직/연구직							기능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6급 (한시 정원)	
정원	177	1	3	6	32	34	26	14	1	60
현원	175	1	2	5	24	31	34	18	-	60

```

graph TD
    A[이사회] --> B[이사장]
    A --> C[감사]
    B --> D[대표이사]
    D --> E[감사실]
    D --> F[경영기획실]
    D --> G[저출생 대응사업실]
    D --> H[돌봄사업실]
    D --> I[양성평등 사업실]
    D --> J[정책개발실]
    D --> K[공간운영실]
    
```

〈여성가족재단의 주요 성과지표〉

주요 성과지표			
단위목표	지표	목표	실적 (25.5월 말 기준)
저출생 위기 대응 및 지원	일생활균형 기업 지원 실적	2,000개 기업	981개
	여성경제활동 진입·성장 지원 실적	3,000명	2,055명
	임산·출산·양육 대시민 지원 실적	2,000가구	1,081가구
서울아이 돌봄인프라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종사자 역량강화 참여자수	4,806명	3,074명
	콘텐츠 개발 건수	26건	12건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및 폭력 대응체계 운영 활성화	양성평등정책 개선 이행률	68.70%	25년 하반기 집계 예정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피해지원	28,000건	15,500건
시민생활 맞춤형 양성평등 정책개발 및 확산	정책개발 및 성과 관리	32건	4건
	프로그램 시민참여 확대	2,900명	392명
	공간 활성화 개선 건수	6건	3건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 및 운영	시민 소통 SNS 게시 건수	100건	67건

〈최근 3년간 주요 운영 실적〉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	정책개발 및 성과 관리	36개	35개	35개
	정책활용도 제고	319.05%	371.43%	400.00%
양성평등 가치의 전략적 확산	일·생활균형 컨설팅 기관 수	60개	68개	107개
	지속가능한 일·생활기반 구축 콘텐츠 개발	16건	12건	16건
	성인지 정책 개선 이행률	49.80%	58.49%	63.47%
	양성평등 소통공간 활성화 콘텐츠 개발	10건	11건	11건
서울형 안심 돌봄체계 구축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21개	42개	41개
	보육교직원 및 돌봄 종사자 교육	2,646명	9,137명	8,527명
	돌봄관련 컨설팅 및 상담	5,389건	2,133건	2,478건
	돌봄컨설팅 이행률	48.33%	58.34%	64.52%

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추이 및 예산

-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여성가족재단에 출연한 예산 규모는 2025년까지 837억원으로 한 해 평균 167억(2021년~2025년, 5년 평균) 규모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출연 금액은 매년 증가해왔으나 2025년 일부 감액되었음.

- 출연금 총액이 늘어난데 반해, 총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은 2021년 73.8%로 최대 비율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 50.6%, 2025년에는 43.2%로 절반 이하의 비율을 기록함.

〈최근 5년간 출연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비율	
	총사업비	출연금	총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	전년도 대비 출연금 증가율
2021	20,371	15,030	73.8%	8.4%
2022	25,080	15,465	61.7%	2.9%
2023	33,327	16,847	50.6%	8.9%
2024	41,043	19,123	46.5%	13.5%
2025	39,865	17,239	43.2%	-9.9%
총액	159,686	83,704	-	-
평균	31,937	16,740	-	-

- 당초 재단의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76억원 (-16.5%) 감소한 386억원으로 이 중 출연금은 1억8천8백만원(-9.9%) 감소된 172억원임.
-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전년대비 63억 9천 6백만원 감소(-13.8%) 하여 최종 398억 6천 5백만원으로 이 중 출연금은 18억 8천 4백만원(-9.9%) 감소하여 172억원이 편성됨.
-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시설운영수입은 대관·주차장·임대매장 운영 확대 등에 따라 3억 6천만원(40.0%) 증가하였고,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비가 2억 9천만원(36.0%) 증가하였고, 이월잉여금수입도 4억 5천만원(24.7%) 증가함.
- 반면, 재단 자체수입은 37억원(20.4%) 감소하였으며, 대행사업수입도 44억 5천만원(31.5%) 감소하였고, 특히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2억 5천만원(100.0%)이 감액되고, 여성능력개발원 운영비 또한 7

억 9천만원(15.3%)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2025년도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예산과목	2024년 예산(B)	2025년 예산(A)	증감액(C) (A-B)	증감율 (C/B)
합 계	46,262,211	39,865,429	-6,396,782	-13.8%
서울시출연금수입	19,123,798	17,239,141	-1,884,657	-9.9%
재단자체수입	18,169,517	14,462,142	-3,707,375	-20.4%
사업운영수입	54,646	-	-54,646	-100.0%
서울가족플라자 운영	4,646	-	-4,646	-100.0%
자치구 공무원 교육 운영	50,000	-	-50,000	-100.0%
시설운영수입	889,571	1,245,329	355,758	40.0%
서울여성플라자 대관운영	110,000	190,000	80,000	72.7%
서울여성플라자 체육시설운영	506,000	502,000	-4,000	-0.8%
서울여성플라자 카페 운영	-	16,500	16,500	100.0%
서울여성플라자 주차장 운영	61,000	72,000	11,000	18.0%
서울여성플라자 입주기관운영	-	218,417	218,417	100.0%
서울여성플라자 NGO센터 운영	40,000	40,000	-	0.0%
서울가족플라자 식당 운영	29,814	29,814	-	0.0%
서울가족플라자 카페 운영	17,598	17,598	-	0.0%
서울가족플라자 대관 운영	36,790	42,000	5,210	14.2%
서울가족플라자 주차장 운영	70,369	78,000	7,631	10.8%
서울가족플라자 임대매장 운영	18,000	39,000	21,000	116.7%
기타수입	1,233,525	1,225,785	-7,740	-0.6%
관리비수입	957,663	1,141,923	184,260	19.2%
기타외수입	275,862	83,862	-192,000	-69.6%
이월잉여금수입	1,836,317	2,290,338	454,021	24.7%
대행사업수입	14,155,458	9,700,690	-4,454,768	-31.5%
수탁기관 운영비	8,968,896	8,164,146	- 804,750	-9.0%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비	2,761,989	2,704,011	-57,978	-2.1%

예산과목		2024년 예산(B)	2025년 예산(A)	증감액(C) (A-B)	증감율 (C/B)
	서울특별시 제1호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1,502,626	1,460,773	-41,853	-2.8%
	서울특별시 제2호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1,259,363	1,243,238	-16,125	-1.3%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비	252,828	-	- 252,828	-100.0%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운영	252,828	-	-252,828	-100.0%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비	816,368	1,110,177	293,809	36.0%
	서울특별시 제1호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492,268	534,385	42,117	8.6%
	서울형 키즈카페 독서점 자별레점 운영	324,100	575,792	251,692	77.7%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운영비	5,137,711	4,349,958	-787,753	-15.3%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5,137,711	4,349,958	-787,753	-15.3%

- 2025년도 세출예산안 중 수탁기관 운영비와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고유사업비는 전년대비 66억 9천만원(-13.82%) 감소한 172억 8천만원, 수탁기관 운영비는 8억 4백만원(-9.0%) 감소한 81억 6천 4백만원 임.

<2025년도 세출예산안>

(단위: 천 원)

예산과목		2024년 예산(B)	2025년 예산(A)	증감액(C) (A-B)	증감율(D) (C/B)
합 계		46,262,211	39,865,429	-6,396,782	-13.8%
고유사업비 총액		23,971,279	17,280,543	-6,690,736	-27.9%
저출생 대응환경 조성 지원		11,383,643	7,575,545	-3,808,098	-33.5%
	일·생활균형 활성화	5,448,000	1,079,500	-4,368,500	-80.2%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4,435,643	4,533,948	98,305	2.2%
	시민 출산·양육지원	1,500,000	1,962,097	462,097	30.8%
서울아이 돌봄 인프라 확대 및 운영 활성화		2,301,315	1,652,650	-648,665	-28.2%
	아동생활권 중심 돌봄지원체계 강화	1,536,315	1,196,387	-339,928	-22.1%
	서울시 아이돌봄기관 운영 지원 강화	765,000	456,263	- 308,737	-40.4%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및 폭력 대응체계 운영 활성화		2,640,319	2,726,708	86,389	3.3%
	서울형 성주류화제도 통합 운영 및 인프라 지원	355,637	204,374	-151,263	-42.5%
	피해시민 관점 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	2,284,682	2,522,334	237,652	10.4%

시민생활 맞춤형 양성평등 정책개발 및 확산		6,594,840	4,288,356	-2,306,484	-35.0%
	양성평등 의제 발굴 및 현장 맞춤형 정책 지원	730,088	538,353	-191,735	-26.3%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활성화	283,713	310,861	27,148	9.6%
	양성평등 소통공간 활성화	5,581,039	3,439,142	-2,141,897	-38.4%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 및 운영		1,051,162	1,037,284	-13,878	-1.3%
	경영시스템 선진화	1,051,162	1,037,284	-13,878	-1.3%
수탁기관 운영비		8,968,896	8,164,146	-804,750	-9.0%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비	2,761,989	2,704,011	-57,978	-2.1%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비	252,828	-	-252,828	-100.0%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비	816,368	1,110,177	293,809	36.0%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운영비	5,137,711	4,349,958	-787,753	-15.3%
일반관리비		13,322,036	14,420,740	1,098,704	8.2%

- 재단의 2025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고유사업비의 경우 ‘일·생활균형 활성화’ 사업이 43억 7천만원(△80.2%) 감액되면서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으며, ‘저출생 대응환경 조성 지원’ 또한 38억 1천만원(△33.5%) 감소함. 반면,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사업은 9천 8백만원(2.2%)이 늘어나고, ‘시민 출산·양육지원’ 역시 4억 6천만원(30.8%) 증액됨.

- 신규 대행사업으로 서울시 중소기업 위라벨 포인트제(5억 1천 5백만원), 서울 공공예식 ‘서울 마이웨딩’ 사업추진(1억 3천 6백만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2억 2천 6백만원) 추진

- 아동돌봄 관련 예산은 전반적으로 축소되었음. ‘아동생활권 중심 돌봄지원체계 강화’가 3억4천만원(△22.1%), ‘서울시 아이돌봄기관 운영 지원 강화’가 3억1천만원(△40.4%) 감소함. 양성평등 분야에서는 ‘정책 추진기반 및 폭력 대응체계 운영 활성화’가 8천6백만원(3.3%)

증가하였고, 특히 ‘피해시민 관점 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은 2억3천8백만원(10.4%) 증액된 반면, ‘성주류화제도 통합 운영 및 인프라 지원’은 1억5천만원(△42.5%) 감액됨.

- 신규사업으로 아동돌봄 콘텐츠 통합 플랫폼 구축 및 확산 사업(1억 5천)추진

- 한편, ‘시민생활 맞춤형 양성평등 정책개발 및 확산’은 23억원(△35.0%) 감소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양성평등 소통공간 활성화’가 21억4천만원(△38.4%)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예산축소가 확인됨. 수탁기관 운영비 또한 8억원(△9.0%) 감액되었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운영비’ 7억9천만원(△15.3%)과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비’ 5천8백만원(△2.1%) 감액이 주요 원인임. 다만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비’는 2억9천만원(36.0%) 증액되어 돌봄 수요 확대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남.

- 신규사업으로 서울시 양성평등 네트워크 사업 및 아카이브 운영(3억 1천만원) 추진

- 이외에도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비’는 운영 종료에 따라 전액(2억5천만원, △100.0%) 감액되었으며, ‘일반관리비’는 11억원(8.2%) 증가하여 경영시스템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남.

〈표〉 여성가족재단 ‘25년 주요 신규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 예산 (단위: 천원)
1	서울시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 지원 (서울시 중소기업 위라벨 포인트제)	•해당 사업 중 일부 기능 신규 추진 : 서울시 중소기업 위라벨 포인트제 •목적 : 아이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확대를 위한 ‘서울 중소기업 위라벨 포인트제’ 운영 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교육 운영으로 서울시 중소기업 일·생활균형 제도 실행력 제고 •내용 : 『서울시 중소기업 위라벨 포인트제』 운영 지원 - 위라벨 포인트 신청 기업 현장 컨설팅 및 지표별 포인트 산정 - 위라벨 포인트 등급(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 실적에 따른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안내 - 위라벨 포인트제 참여 기업 포인트 관리(추가 적립등급 관리 등) - 위라벨 포인트제 정보화 시스템 구축운영(홈페이지 구축 및 기능 개선) - 대시민 대상 일생활균형 홍보 및 현장 지원	총 867,000 (서울시 중소기업 위라벨 포인트제 추진 예산 515,000)
2	아동돌봄 콘텐츠 통합 플랫폼 구축 및 확산	•목적 : (문화약자와의 동행) 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른 미래성장 가능한 돌봄 콘텐츠 제공 및 확산, 아동의 발달특성을 반영한 돌봄 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내용 - 아동의 발달특성을 반영한 돌봄 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미래성장 돌봄 관련 분야의 콘텐츠 선도를 위한 공론장 마련 - 지역의 놀이 및 돌봄기관을 통한 다양한 놀이 체험 기회 연계 활성화 - 신규 창작 놀이 등 돌봄 콘텐츠 확산을 위한 ‘팝업놀이터’ 운영	150,000
3	서울시 양성평등 네트워크 사업 및 아카이브 운영	•목적 : 양성평등정책 아카이브를 통한 국내외 정책자료 집적 및 시민접근성 강화, 공동 의제 발굴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국내외 정책성과 공유확산 •내용 - 양성평등정책 종합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 양성평등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공동의제 발굴·확산 - 국내외 양성평등 정책성과 확산	310,861
4	서울시 여성· 가족 지원을 위한 복합공간 발전 방안 연 구	•목적 : 서울시여성발전센터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고 여성과 가족, 다양한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권역별 복합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한 공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내용 - 서울시여성발전센터 공간 활용 및 기능 검토 - 서울시 권역별 여성·가족 유관 시설 현황, 부족 시설 분석 - 권역별 여성·가족 관련 필요 공간 및 기능 조사 - 서울시 여성·가족 지원을 위한 권역별 복합공간 구성 및 운영 방안 도출	28,041
5	서울시 가사· 돌봄 분야 외 국인력 도입 실태와 과제	•목적 :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가족 구조의 변화는 가족 구성원이 전담하던 가사·돌봄 분야의 사회적 부담을 가중화시킴. 2024년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가사·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실태와 이슈를 검토하여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내용 - 가사·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 정책 현황 검토 - 서울시 외국인 가사서비스 이용 및 일 경험 실태 조사 - 서울시 가사·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 정책 과제 제안	16,947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 예산 (단위: 천원)
6	서울시 가족센터 운영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목적 : 저출생 대응 및 가족 변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시 가족정책 핵심 전달 기관인 서울시가족센터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센터 발전 방안을 모색함 •내용 - 서울시 가족센터 운영 현황 분석: 정책 환경(내·외부), 예산, 인력, 사업 현황 등 - 서울시 가족센터 운영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 서울시 가족센터 운영 발전 방안 마련	10,215
7	서울시 거주 한부모가족 생활 실태조사 연구	•목적 :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와 교육비용 부담(초등 81.4%, 중등 이상 82.1%)이며, 필요한 정책지원도 양육비 등 현금지원(66.9%)이 높게 나타남(여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시 거주 한부모의 약 10%에 불과함. 서울시 한부모의 주거 및 교육 등 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서울형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정책 과제를 제안함 •내용 - 한부모가족 현황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 검토: 중앙, 서울시, 타·시도 등 - 서울시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 - 서울형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지원 정책 과제 제안	21,429
8	서울형 성별영향평가 심층 컨설팅 개선 방안 연구	•목적 : 성별영향평가 심층 컨설팅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중간 단계 성격을 띠는 서울시 고유의 성주류화 제도 운영 방식으로, 서울형 성별영향평가 제도 안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시정의 성주류화 확산 및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내용 - 서울시 분야별 성평등 이슈 분석 -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심층 사업 추진현황 분석 - 타지역 사례 검토 및 관계자 조사 - 성별영향평가 심층 컨설팅 운영 모델(안) 제안	6,300
9	서울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실태조사	•목적 : 서울시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관한 인식 및 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범죄예방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함 •내용 -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관련 법·정책·선행연구 검토 - 서울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실태조사 및 결과 분석 - 서울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및 지원자 요구 파악 - 서울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33,800
10	서울시 양성평등 고용정책 연구	•목적 : 고용의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개발하고, 여성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서울시 양성평등 고용정책의 방향과 세부 과제를 제안함 •내용 - 서울시 성별 고용현황 등 양성평등 고용정책 환경 분석 - 서울시 취업자 등 집단별 정책 평가 및 수요 조사 - 서울시 양성평등 고용정책의 방향과 과제, 추진 방안 도출	38,286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 예산 (단위: 천원)
11	폐원위기 어린이집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 방안	•목적 : 폐원위기 어린이집 지원과 보육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행어린이집 지원사업 정책 성과평가를 통해 차년도 정책 개선점과 발전 방향 모색 •내용 -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공인 지원, 환경개선비 지원, 보조교사·대체교사 우선 지원, 서울형 시간제 운영, 경영컨설팅 지원 등 2024년 폐원위기 어린이집 대상으로 시행된 동행어린이집 정책의 성과 분석 - 서울시 동행어린이집 지원 정책 개선 방안 도출	13,744
12	서울시 제5차 보육 중장기 계획 수립 연 구	•목적 :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 종결(2025년)에 따라 제5차 중장기 보육계획 (2026-2030)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필요성이 대두됨. 1차부터 4차 중장기계획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보육 수요 변화를 예측하여 서울시의 선제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내용 -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보육 정책 및 정책 환경 분석, 행정자료 검토 등 - 보육기관과 양육자 실태 및 정책 요구 확인 ① 2021년 ~ 2024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보육 관련 설문조사 결과 재분석 ② 면접조사(FGI) - 정책 평가 및 수요 예측, 전문가 간담회(4회, 20명) 및 전문가 조사(100명) - 5차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을 위한 비전 및 추진체계 등 정책 제언	20,700
13	서울형 키즈카페 성과평가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 연구	•목적 : 아동 놀 권리 증진 및 돌봄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키즈카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성과평가체계 구축 방안 제시 •내용 - 서울시 놀이·여가 시설 현황 및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관리 현황 분석 - 서울형 키즈카페 전략체계 및 성과목표·성과지표 도출 - 서울형 키즈카페 성과평가 실행체계 제안	21,429
14	지역사회 초등 방과후 돌봄 기능개선 방안 연구	•목적 : 늘봄학교 도입 등 교육부의 초등 방과후 돌봄이 지역사회 돌봄 기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초등 돌봄이 통합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기능 및 협력 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내용 - 초등 방과후 돌봄 정책 현황 및 쟁점 분석 - 초등 돌봄 기관 운영 현황과 협력 체계 분석 - 초등 돌봄 기관 운영 실태 및 수요 조사 실시 - 지역사회 초등 방과후 돌봄 기능 및 협력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모색	18,802
15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운영개선 방안 연구	•목적 : 저출생으로 인한 입소 아동 감소, 가정형 보호로의 정책 전환 등 아동 양육시설은 사회·정책적 변화에 직면함. 이에, 시설의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내용 - 보호대상 아동 정책 및 정책 환경 분석, 행정자료 검토 등 -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운영현황 및 수요 조사 실시 - 아동양육시설 운영개선 방안 제시	17,602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 예산 (단위: 천원)
16	서울형 아이돌 봄비 지원사업 평가 및 향후 과제	•목적 : 저출생 대응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조부모 손자녀 양육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됨. 이에 2023년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2024년 초기 성과 기반의 평가 지표가 개발됨. 2025년에는 상반기까지의 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사업 지속 가능성과 발전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내용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운영 현황 분석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조사 실시 -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의 향후 과제 모색	18,500
17	2025년 서울특별시 아동종합실태 조사	•목적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년 주기의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통해 아동 삶의 질 개선 및 아동 친화 도시 추진을 위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내용 - 아동종합실태조사 문항 검토 및 '25년 조사표 개발 -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 및 정책 수요 분석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아동정책 추진 관련 정책 시사점 및 합의 도출	126,711

3 종합의견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⁵⁾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지방재정법」이 규정한 시의회 출연 사전 동의의 대상 기관임.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의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 및 아동 권리 보장, 가족 다양

성 지원과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여성·아동·가족·보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조사연구, 정책개발, 교육·자문 및 시설 운영을 수행하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추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2026년도 출연금은 재단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한 필수 재원으로, 재단 설립 고유 목적에 맞게 수반되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사업 운영의 적절성과 수행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동 동의안은 재단의 세부 예산 편성 이전에 출연에 대한 동의만을 결정하는 바, 출연 규모의 적정성과 수탁사업 및 세부 사업의 타당성은 2026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출연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주요 사업의 성과실적 평가, 사업수행에 따른 적절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5)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3070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 서울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 복지증진 및 아동의 권리 보장, 가족 다양성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여성가족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소재지 :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대방동) 등
- 운영시설 : 서울여성플라자 및 서울가족플라자
 - ▶ 서울여성플라자 : 지상 5층, 지하 3층(연면적 22,520 m^2)
 - ▶ 서울가족플라자 : 지상 2층, 지하 2층(연면적 14,710 m^2)



서울여성플라자



서울가족플라자

○ 근거법령

- 법 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 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기금 및 출연금 등)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나. 주요사업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교육 및 자문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당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 권리 보장에 필요한 지원
- 국내외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 기관과의 연계·교류 및 민간 협력
- 서울여성플라자 및 서울가족플라자의 운영·관리 등

다. '26년 소요예산(안) : 19,754,834천원

라. '26년 예산 산출근거(안)

- 사 업 비 : 7,493,306천원
- 일반관리비(인건비, 운영비 등) : 12,261,528천원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마.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 및 시민체감형 양성평등 정책실행을 위해 설립된 서울여성가족 재단 운영 지원을 통해,
-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 서울여성의 경력 활성화, 아동의 권리 보장, 그리고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이광훈 (☎2133-5010)